

대전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나108792(본소), 2022나108808(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형국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10.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가단8542(본소), 2021가단 126907(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재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2. 5 19.까지”를 “2022. 5. 19.까지”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6,36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160,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행의 “3,276,835원”을 “3,276,075원”으로, 같은 면 제20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자금관리자인 피고는 시공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집행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공사대금 합계 59,800,000원, 즉 ① 2018. 1. 9. L에 대한 목수인건비 14,000,000원, ② 2018. 1. 18. M에 대한 철근자재비 1,500,000원, ③ 2018. 3. 12. N에 대한 샹시 공사대금 10,000,000원, ④ 2018. 4. 11. N에 대한 샹시 공사대금 8,000,000원, ⑤ 2018. 5. 11. N에 대한 샹시 공사대금 2,500,000원, ⑥ 2018. 5. 15. O에 대한 가구 욕실 등 공사대금 23,800,000원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므로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185,401,000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는 2018. 1. 1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116,971,000원을 실제 지출하였으나,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2018. 1. 18.까지 지급한 비용이 151,224,000원으로 부풀려져 계상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인 59,800,000원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과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수시로 피고에게 업체 등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보내면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M의 계좌번호를 피고에게 보낸 기록도 남아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N, O는 원고의 요청으로 공사를 한 후 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위 문자메시지나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기억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59,800,000원을 임의로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완납확인서 작성 당시 건축주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182,124,925원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대금 합계 59,8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가 2018. 1. 18.까지 지급한 비용이 부풀려져 계상되었다고도 주장하는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1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116,971,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2018. 1. 18.까지 지급한 비용이 151,224,000원으로 기재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다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상의 비용이 위와 같이 기재된 것은 2018. 1. 18. 당시 이미 설치되거나 공사가 마쳐져 곧 집행될 것이 명확한 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와 피고, 건축주 3인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모두 위 확인서의 작성 당시 작성 시점인 2018. 1. 18.까지 발생한 비용을 확인하고 합의 하에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원고와 피고, 건축주는 함께 이 사건 완납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건축주가 피고에게 182,124,925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지출한 185,401,000원과 거의 일치하는바, 만약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가 일부러 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것이라면 이 사건 완납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의 주장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3,276,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2022.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병준, 판사 이소민, 판사 이호영